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지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된 다대동 120-28번지에 공립보육시설 다송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근거 마련

2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(보육시설의 설치)

3. 주요골자

- 다송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
(제2조 명칭 및 위치신설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건은

- 사하구 다대2동 일원의 영·유아 보육대상자 들의 건전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송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하므로써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보호자의 사회적,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므로써 밝고 건강한 가정복지증진과 시민상 구현에 일조를 기한다고 판단되며

특히 영·유아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설치·운영 및 보조금지금등이 명분
화 되어 있는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